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The·K 가족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학 교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교직원공제회 업무협약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이라 한다)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대학 교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상호 이해와 업무협조의 폭을 넓히고, 양 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대교협과 공제회가 대학 교직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대교협과 공제회는 상호 신뢰의 원칙하에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1. 대학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협력
2. 기관 상호간의 업무 협조 및 자료제공
3. 기타 다각적인 상호 협력방안 모색

제3조(세부 실행 사항) 대교협과 공제회의 교류 및 업무협조에 있어 세부 실행 사항은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별도로 한다.

제4조(협약의 변경) 대교협과 공제회는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비용) 본 협약의 시행에 따른 협력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상호 합의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발효일 및 유효기간 등) 본 협약은 쌍방이 서명한 날부터 발효되고 두기관의 별도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7조(기타)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2012년 5월 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The K 가족
한국교직원공제회

회 장 함 인 석



이사장 김 정 기


